
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(권은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47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1. 19.

발 의 자 : 권은희 · 강민국 · 김기현
김예지 · 김정재 · 유동수
윤주경 · 윤창현 · 이용우
조명희 · 최연숙 · 홍준표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등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, 부실책임 관련 조사,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공사의 조사 대상이 되는 부실관련자의 개념 중 “그 밖의 제3자”의 범위를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로 한정하고 있어 그 외 부실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조사에 어려움이 있고, “그 밖의 제3자”를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면밀한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부실책임조사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제3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의2제7항 및 제21조의4제1항).
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”를 “회계법인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법인, 감정평가사, 법무법인, 변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용역제공자”로 한다.

제21조의4제1항 전단 중 “부실관련자(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그 밖의 제3자는 제외한다)”를 “부실관련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의2(손해배상청구권의 대 위행사 등) ① ~ ⑥ (생략)	제21조의2(손해배상청구권의 대 위행사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공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 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 구의 요구,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 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부실 금융회사등, 부실관련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이해관계인(이하 “이해 관계인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자 료제출요구, 출석요구(이해관계 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제외한 다) 등 조사를 할 수 있다. 다 만, 부실관련자 중 그 밖의 제3 자의 범위는 <u>회계법인 또는 공 인회계사</u> 로 한정한다.	⑦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회계법인, 공인회계 사, 감정평가법인, 감정평가사, 법무법인, 변호사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전문용역제공자----- -----.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
그 특정점포는 이에 따라야 한다. ② · ③ (생 략)	----- --.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--	---